○ ○ 지방공소청

주 소 :

전화번호 :

□□□-□□□

요금후납

받는 사람

□□□-□□□

용어 설명 등 안내

◉ 벌과금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◉ **납부방법은 뒤 쪽 납부안내문을 참조하여 납부**하시기 바라며,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소청 홈페이지(http://www.spo.go.kr)에 접속하시거나 ○ ○ 지방공소청 집행과(전화 :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◉ 용어 설명

- 가납벌과금: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(「형사소송법」 제334조)
- 지로번호: 금융결제원이 벌과금 등 각종 요금을 수납받기 위하여 각 이용기관에 부여한 7자리 숫자의 일련번호
- 입금계좌번호: 신한은행에서 부여한 개인별 벌과금납부 전용계좌 번호
- 전자납부번호: 공과금수납기, CD/ATM(현금입출금기),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를 통한 납부 시 필요한 벌과금에 부여된 고유번호
- 납부자번호: 공소청에서 벌과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

◉ 본 지로용지는 전산 처리되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

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

(납부자용)

지로번호	
금 액	

납부자번호(가징번호)	
성 명	
종 류	
납부기한	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.

※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.

년 월 일

수납인

지로의뢰서

OCR (수납은행용)

지로번호	
금액	

납부자번호(가징번호)	
성 명	
종 류	
납부기한	

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.

수납인

금융결제원 승인 **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** (금융결제원용)

제 088248 호

전자납부가능

OCR 지로번호 □□□□□□□ 금액 원

지 로 번 호	고 객 조 회 번 호 \|C\|	금 액 \|C\|	\|Code\|

(태영T3281-8111) *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.

입금계좌번호		전자납부번호	
납부자번호(가징번호)		법 원 번 호	
성 명		생 년 월 일	
종 류		납 부 기 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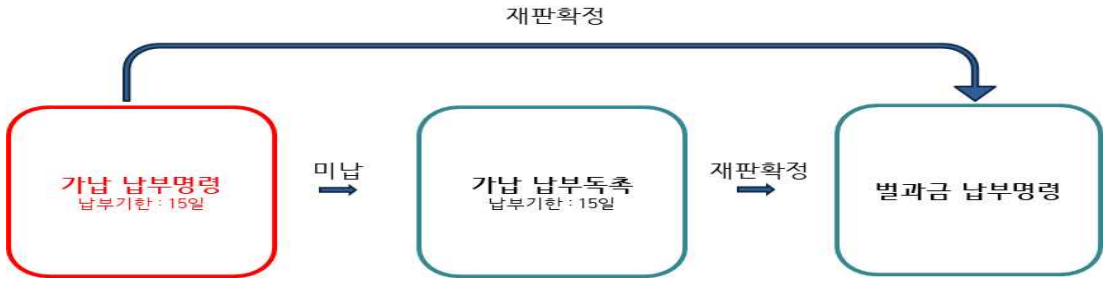
위 가납명령된 벌과금을 금융기관(납부안내문 참조)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수납인

지방공소청(지청) 검사

가납 벌과금 납부안내

[벌과금 집행 절차]



[납부 방법 안내]

가상계좌 납부
[벌과금 입금전용 계좌]

- 납부방법:
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
- 예금주가 '(공소청)성명'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
- 이용가능시간:
 00:30 ~ 22:50(365일 가능)

인터넷·모바일 납부
(카드 결제 불가)

- 인터넷지로
 - '인터넷지로'(www.giro.or.kr) 검색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(공소청벌과금 및 과태료등) 선택 → 주민등록번호/전자납부번호로 조회
- 모바일지로
 - '모바일지로' 앱 설치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조회/납부 →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→ 주민등록번호/전자납부번호 조회

직접 납부

- 금융기관 직접 납부
 - 가까운 금융기관(농협, 수협, 우체국 포함) 창구에 직접 납부

※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

- 금융기관 CD/ATM(현금자동입출금기) 납부
 - 전국 금융기관 CD/ATM(현금자동입출금기) → 지로/공과금납부 → 예금통장 투입 → 전자납부번호 조회/납부

※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

가납 벌과금은 **신용카드·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,**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**재산에 대해 강제집행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기타 문의전화 : 1301(공소청 콜센터)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(재산형집행계)